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 입니다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 입니다

02	chapter 1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05	chapter 2	불법촬영·유포피해의 이해
06		2.1.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
07		2.2.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11	chapter 3	피해 유형별 지원 방법
13		3.1. 불법촬영
14		3.2. 유포피해
17		3.3. 유포협박
18		3.4. 불안피해
20	chapter 4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갖는 의미
21	참고 1.	협력 기관
22	참고 2.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근거 법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사관님께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지 않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파트너의 제안에 응했거나 자진해서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냈으므로 유포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는 사전 예방이 어려우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유포피해 촬영물이 음란물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유포피해는 피해촬영물을 규제 없이 유통하는 온라인 시장이 존재하고 이를 소비하는 실태로 인해 발생합니다.

“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입니다. ”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조력자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첫번째 조력자로서 피해회복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회복 과정의 시작부터 세상과 피해자 사이 관계 설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피해자는 용기를 잃기도, 얻기도 합니다. 조력자로서 경찰의 역할은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 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유포피해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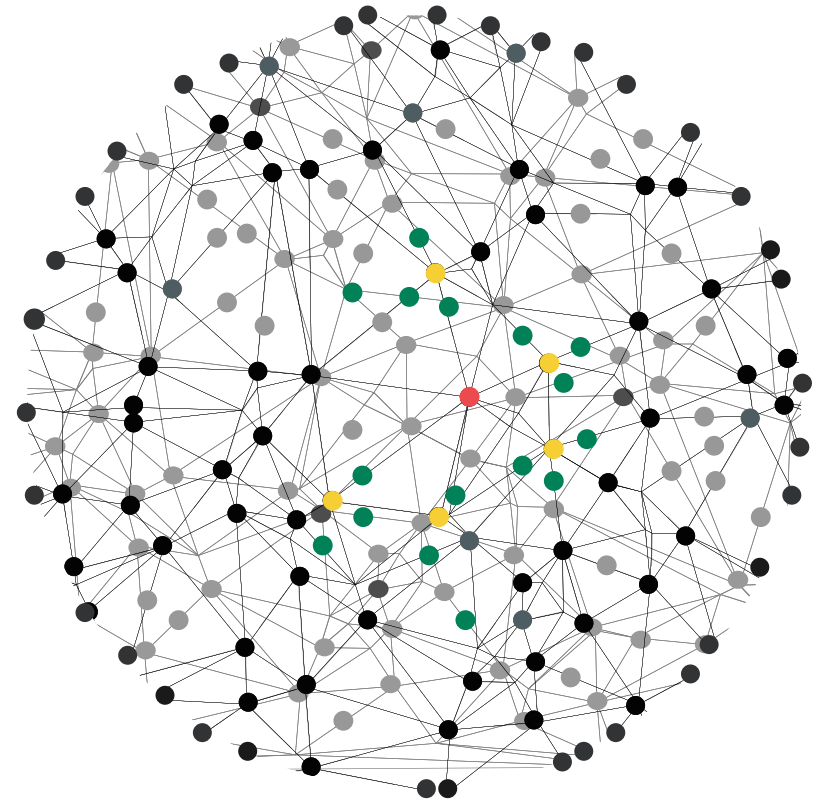
“ 피해회복은 당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

범인 검거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회복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범인 검거나 처벌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 필수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단서 부족으로 검거에 실패한 사건임에도 수사관이 젠더기반 폭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선입견 없이 수사할 때, 피해자는 수사 기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고 비로소 본인의 일상이 안전하다고 인지합니다.

경찰이 내가 겪은 폭력과 부당함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을 뚝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1.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

불법촬영·유포피해는 촬영물을 이용하며,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의 특성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피해 상황 자각 어려움

상습 가해자당 다수(수백 명)의 피해자

유포로 인한 피해 확대 가능성

유통 수익 목적의 촬영 발생 가능성

사이버 공간 매개 성폭력의 특성

공간

시·공간 제약없음, 해외 유포 가능성
반복적, 지속적 피해

피해자

한 명의 피해자, 셀 수 없이 많은 가해자
피해가 끝나지 않으리라는 절망감

대응

유통 플랫폼 사업자, 헤비업로더가 피해촬영물 유통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국가와 수사 기관의 유통 시장 개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성폭력

2.2.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젠더기반 폭력이란? (Gender Based Violence, GBV)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성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폭력
- 가정폭력, 성기 절단, 지참금 살인, 명예 범죄같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
- 전쟁 무기로서의 강간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폭력

* 출처: UN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Q 불법촬영·유포피해는 젠더기반 폭력인가요?

A 그렇습니다.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신체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촬영물로 소비되는 신체는 주로 여성의 신체이며, 남녀가 다 노출되어도 여성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가해자 역시 이 점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젠더기반 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경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수사한 수사관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는 명백한 젠더기반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사회적인 고정관념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피해자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며, 불법촬영·유포피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에 피해자는 도움 요청이나 경찰 신고를 망설이고,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변 시선에서 피해자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움~~

- | | |
|-------------------------------------|------------------------------|
| 피해자는 웃을 수 없고 울어야 한다. | 피해자는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다. |
| 피해자는 당당할 수 없다. | 피해자는 당당할 수 있다. |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
|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 |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
|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 빠진다. | 피해자는 피해에서 회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피해자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다. | 피해자는 강인한 존재일 수 있다. |
| 피해자는 이성적이거나 침착할 수 없다. | 피해자는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 | | |
|---|---|
| 피해자는 어떤 빌미도 제공하면 안 되며, 성폭력은 완전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 | 피해자는 '피해자다움'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적 영상 촬영에 동의하거나, 본인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것이 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니다. |
| 피해자는 평소 순결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 피해자의 평소 행실은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다. |
|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을 즐기는 것과 성폭력 피해는 무관하다. |

피해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자는 타인이 자신의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피해자 1 : 가해자 1'이 아니라 '피해자 1 : 가해자를 포함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영상을 봤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를 경험한 이후 일상의 작은 사건들도 모두 연쇄적인 피해처럼 느껴집니다. 불법촬영 관련 뉴스나 주변인의 무심한 질문도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모(화장, 치마, 매니큐어 등)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질문이라면 질문이 필요한 맥락을 설명합니다.
- 감정적 기복이 있을 때는 기다립니다. 울거나 대답을 똑바로 못하면 채근하지 말고, 피해자가 진정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 동료 경찰이 피해자를 배려해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피해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 가명 조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형사고소 과정과 관련 용어(기소, 송치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수사 절차상 불가능한 조치(영장 기각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재판까지 사용되는 진술서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 피해자 권리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chapter 3

피해 유형별 지원 방법



피해 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에서 피해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1. 불법촬영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13
3.2. 유포피해	동의 없이 또는 합의하에 촬영된 성적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피해	14
3.3. 유포협박	성적촬영물을 인터넷 공간이나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17
3.4. 불안 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되었거나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18

적용 법률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유포피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유포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당하는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인 경우, 불법촬영 적용 법률도 적용됩니다.

3.1. 불법촬영 누군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피해

“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바닥을 보니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해 나와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자 누군가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수사시 유의 지점

- 불법촬영에 사용된 기기를 압수 수색합니다. 온라인 저장 공간(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등) 역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경우, 불법촬영이 발생한 장소 근처를 조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CCTV, 카드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창구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가해자의 저장 공간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지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1) 불법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 조치를 원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 압수가 어려운 이유를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 2) 현장에서 발견했을 경우, 가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여 상황에 개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3.2. 유포피해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촬영물이 몰래 유포되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성적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

“ 예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헤어질 때 지워 달라고 했고 당연히 지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퍼졌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사시 유의 지점

-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증거 자료 제출에 서툴러도 다그치지 않고 안내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해 성기 노출 장면을 캡처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여성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 재유포자에 대한 신고는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14조를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1) 피해자가 피해촬영물의 삭제를 원할 시, 삭제 지원이 가능한 지원 센터에 연계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삭제 지원 단체 안내는 21쪽)
- 2) 피해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3) 유포 플랫폼이 해외 서버 포르노사이트나 SNS의 경우 수사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조기 종결하지 않습니다.
- 4) 피해자가 아이디를 특정한 경우, 아이디 외의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하지 않습니다.

피해촬영물 삭제의 중요성

사이버 공간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포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유포될지 모릅니다. 피해촬영물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단 한 건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경찰이 직접 삭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촬영물 삭제는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곳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해당 기관 상세 정보 및 기타 지원 단체 안내는 21쪽 참조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도 사이버 공간 특성상 100% 삭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지원 시작 후 곧바로 피해촬영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퍼져 있는지 찾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기보다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삭제 지원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웹하드

피해촬영물이 웹하드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 게시물의 링크·제목·콘텐츠 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합니다.
- ② 해당 사이트 내 신고 창구를 이용해 피해촬영물임을 알려며 삭제를 요청합니다.
 -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이메일로 메일 발송 - 해당 게시물 내의 신고 버튼을 이용해 신고
 - 사이트 내의 일대일 문의하기를 통해 신고 - 사이트 내의 피해구제 센터 이용해 신고

2) 불법 포르노사이트

피해촬영물이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촬영물의 링크를 복사하고 영상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피해 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 ③ 권리 침해 정보 심의 신청을 합니다.
 - 본인 인증 후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링크와 캡처본을 첨부해 신고

3) SNS

피해촬영물이 SNS에 유포되었을 경우 해당 **해당 SNS의 신고 창구**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신고창구	주소
텀블러	가이드라인 침해 신고 창구 (신고시 신분증 첨부, 미성년자는 신분증 없어도 신고 가능)	https://www.tumblr.com/abuse
페이스북	사생활 보호권 침해 신고 창구	https://www.facebook.com/help/contact/144059062408922
트위터	개인정보 노출 신고 창구	https://help.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프로필 악용 사례 신고 창구	https://help.instagram.com/192435014247952?helpref=faq_content

3.3.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 공간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

“ 이별을 통보하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뒀다며 헤어지면 유포한다고 협박합니다. 불안해서 헤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 이대로 만나야 될까요? ”

✓ 수사시유의 지점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에게 훨씬 위협적으로 작용되는 사회 문화적 인식을 이용한 협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의 긴급 체포, 압수 수색, 구속 등의 조치가 없다면 피해자 스스로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협박을 통한 추가적인 피해촬영물 갈취나 성관계 요구 등의 2차 범죄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포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락이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1) 경찰이 가해자의 컴퓨터나 핸드폰, 드라이브 등을 수색, 피해촬영물을 증거로 채증하고 유포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 2)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 구속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를 바랍니다.
- 3)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 합의하 촬영의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4. 불안피해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예전에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어요. 얼마 전 헤어졌는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까 봐 걱정됩니다. 혹시 영상이 유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불안 심리의 원인

현 사회에서는 동의 없이 유포되는 피해촬영물이 음란물로 유통됩니다. 이렇게 불법 영상이 소비되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언제 몰래 찍힐지,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불안'은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피해 유형입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로 인한 불안은 단순히 불안함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습관마저 바꿉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카메라를 찾아보거나 본인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음란물 사이트를 뒤져보는 것도 불안피해 증상입니다. 과민해서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공포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피해가 발생합니다.

✓ 필요한 조치

불안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대면했을 경우, 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례일지라도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사건을 사소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 범죄 예방 차원의 대응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을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유포피해가 우려되는 촬영물이 존재하고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삭제를 했다고 할 경우 대화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관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삭제를 완료했다는 각서를 받은 후 공증을 받아 놓습니다.

- 위 조치 외에도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관 기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갖는 의미

피해회복은 피해를 인지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신고는 제도권 내에서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피해자의 의지입니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자의 경우, 사회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낙인 때문에 신고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촬영물이 노출되므로 신고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큼니다.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다른 범죄 피해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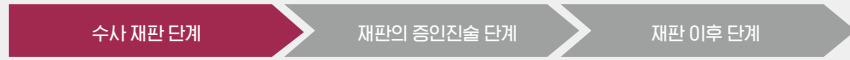
용기를 내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신고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거나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 회복 자체에 대한 의지를 잃고 좌절합니다. 불법촬영·유포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수사 과정에 담은 경찰을 기대합니다.



참고 1. 협력 기관

<p>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p>	<p>상담 연락처 02-735-8994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www.women1366.kr/stopds</p>
<p>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p>	<p>상담연락처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상담시간 평일 13:00 ~ 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www.cyber-lion.com</p>
<p>한국성폭력상담소</p>	<p>상담 연락처 02-338-5801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성폭력피해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www.sisters.or.kr</p>
<p>한국여성의전화</p>	<p>상담 연락처 02-2263-6464,5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www.hotline.or.kr</p>
<p>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p>	<p>상담 연락처 02-335-1858 상담 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 내용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기타 지원 http://womenlink.or.kr</p>

참고 2.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근거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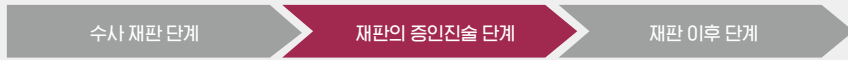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근거 법률
성폭력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 -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무료법률구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성폭력방지법 제3조 및 제7조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6조 (진술조력인 수사과정 참여),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변안전조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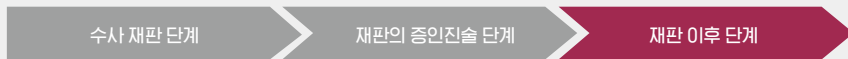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 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38조 (인권보호담당관 설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6조 (2차 피해 방지)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8조~제71조
--	---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영상물의 촬영 · 보존 등)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184조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 · 등사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
처분 결과를 알 권리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근거 법률
진술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피해자진술의 비공개)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65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40조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 (영상물 촬영)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근거 법률
선고 결과를 알 권리	형사소송법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보석 등의 취소)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경찰편**

당신이 첫번째 조력자입니다

발행일 2018.12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인 박원순
저 자 최자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임경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박정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삭제팀장

ISBN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 본 가이드는 「2018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